

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IBK 2년만기형 증권투자신탁 4[채권]

2. 주요 변경 사항

-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
- ②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③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정사항 반영
- ④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3. 시행일 : 2021년 07월 15일

4. 변경 대비표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-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X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연혁추가
5. 운용전문인력	-	가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 업데이트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신 설)	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<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정사항 업데이트> ⑧ 해외증권: 외화로 표시된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⑨ 해외장내파생상품: 그 해외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다만,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1,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> - 최근현황 업데이트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나. 과세 <소득세법 개정사항 업데이트>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<납입요건>	나. 과세 <소득세법 개정사항 업데이트>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<납입요건>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및

	<p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<연금계좌의 세액공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^(주1) <p>(신 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^(주2) <p>- (신 설)</p> <p>※(주1)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※(주2)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 <p>① 세액공제(2015년 1월 1일부터): 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 	<p><u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</u></p> <p>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p> <p><연금계좌의 세액공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<p><u>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동안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로 함 ^(주1)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^(주2) - <u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^(주3)</u> <p>※(주1)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※(주2)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※(주3)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</p> <p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 <p>① 세액공제(2015년 1월 1일부터): (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+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해당하는 금액을
--	--	---

	<p>세액공제함 (신 설)</p> <p>-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^(주1)</p> <p>※ (주1)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</p>	<p>세액공제함</p> <p>- 단, 2020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 적용</p> <p>-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^(주1)</p> <p>※ (주1)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</p>
<p>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
<p>1. 재무정보</p>	<p>-</p>	<p>가. 요약재무정보 나. 재무상태표 다. 손익계산서 - 최근현황 업데이트</p>
<p>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</p>	<p>-</p>	<p>- 최근현황 업데이트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-</p>	<p>가. 연평균수익률 나. 연도별수익률 다.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- 최근현황 업데이트</p>
<p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</p>		
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	<p>-</p>	<p>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 - 최근현황 업데이트</p>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

1. 펀드명 : IBK 2년만기형 증권투자신탁 4[채권]

2. 주요 변경 사항

-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
- ②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
3. 시행일 : 2021년 07월 15일

4. 변경 대비표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투자비용	-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투자신탁 결산 및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보 갱신 등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비용 관련 정보 - 운용전문인력 현황 자료 - 성과 관련 정보 등